

教育法中改正法律(案)

議案	
番號	

提出年月日: 1980. . .

提出者: 政 府

提案理由

教育正常化 施策의 一環으로 教育大學의 修業
年限을 4 年으로 延長하고, 大學의 聽講生制度
를 廢止하며, 大學入學制度和 高等學校入學制度
를 改善함.

主要骨子

- (1) 高等學校의 入學은 市·道別로 施行하는 選
拔考査에 의하여서만 入學할 수 있는 것
을, 內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方法에
의해서도 入學할 수 있게 함.(第 107條의 2)
- (2) 大學入學豫備考査制를 大學入學學力考査制로
變更하여 그 重要事項을 規定하는 한편,

考查의 施行과 大學入學選拔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함.(第 111 條, 第 111 條의 2)

- (3) 大學의 聽講生制度를 廢止하여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기함.(第 114 條)
- (4) 現在 2 年制인 教育大學의 修業年限을 4 年으로 延長함.(第 120 條)
- (5) 國家技術資格法 施行으로 實效성이 喪失된 技術員資格證制度를 廢止함.(第 136 條)
- (6) 教員資格基準등을 改善 調整함.

法律 第 號

教育法中改正法律 案

教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 19 條의 題目을 “ (教育委員의 兼職禁止) ” 로 하고,
同條 第 1 項中 “ 私立學校法人 ” 을 “ 私立學校를 設置、經營하는 法人 ” 으로 하며, 同條 第 2 項을 削除한다.

第 20 條의 題目을 “ (選出委員의 辭任) ” 으로 하고,
同條中 “ 委員會 ” 를 “ 教育委員會 ” 로 한다.

第 21 條의 題目을 “ (選出委員의 解任要求) ” 로 하고,
同條中 “ 委員會 ” 를 “ 教育委員會 ” 로 한다.

第 80 條의 題目을 “ (教育會) ” 로 하고, 同條에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會의 組織方法과 運營에 관한 基本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03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03 條 (入學資格) 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國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力

~~4-1-13~~

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.

第 107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07 條의 2 (高等学校入学方法) ① 高等学校의 入学은 서울特別市·釜山市·道別로 施行하는 選拔考査에 의하거나, 内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銓衡에 의하되, 그 入学의 方法과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内申成績 또는 選拔考査에 의하지 아니하고 入学시킬 수 있다.

1. 外國에서 9年이상의 學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
2. 外國의 學校에서 國內의 中學校에 轉學 또는 編入學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
3. 特殊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實業系 高等學校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校에 入学하는 者

② 第 1 項第 3 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제외한 實業系 高等學校와 芸能·體育系高等學校등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學校에 대하여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内申成績 또는 選拔考査에 의하는 外에 그 入學의 方法과 節次등에 관하여 特例를 정할 수 있다.

第 111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11 條 (大學入學資格) ①大學(師範大學·教育大學·專門大學을 包含한다.)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施行하는 大學入學學力考査(이하 “學力考査”라 한다)를 거친 者로 한다. 다만,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學力考査를 免除할 수 있다.

1. 外國에서 12年以上의 學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
2. 外國의 學校에서 國內의 高等學校에 轉學 또는 編入學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

②學力考査는 每年 施行하되, 그 學力考査成績은 當該年度에 限하여 效力이 있다.

③學力考査의 施行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

第 111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 111 條의 2 (大學入學方法) 大學의 入學은 第 111 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

選拔方法에 의한다.

第 112 條의 題目을 “ (大學院의 修業年限 및 入學資格) ”
으로 하고, 同條 第 2 項中 “ 師範大學 ” 을 “ 師範大
學 · 教育大學 ” 으로 한다.

第 114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14 條 (公開講座) 大學에는 學生以外的 者를 對
象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들 수 있다.

第 115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15 條 (學位) ① 大學 · 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의 定
員內的 學生으로서 所定の 全課程을 履修하고 일
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, 大
學院에서 所定の 課程을 履修하고 一정한 試驗에
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한다.

② 大學 · 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에서 3 年 이상 履修한
定員內的 學生으로서 成績이 特히 優秀하여 所定
의 全課程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早期
履修하고 一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第
110 條, 第 120 條 및 第 122 條의 規定에 의한 修
業年限에 達하기 前에 學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.

③ 大學校 (大學院을 둔 單科大學을 포함한 가)에서는

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.

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學位를 수여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敎部에 登錄하여야 한다.

⑤學位授與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1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120條(修業年限) 教育大學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.

第128條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128條의 4(大學編入學)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는 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다.

第133條의 題目을 “(高等技術學校의 入學資格).”으로 하고, 同條中 “3年制 技術學校” 다음에 “3年制 高等公民學校”를 挿入한다.

第136條를 削除한다.

第14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143條(目的) 特殊學校는 視聽覺 障礙者등 心身 障礙者에게 幼稚園·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에 準한 敎育과 그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 및 技能을

가르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152條의 題目을 “ (授業) ” 으로 하고, 同條 第1號中 “ 師範大學 ” 다음에 “ 教育大學 ” 을 插入한다.

第154條의 題目을 “ (學年制) ” 로 하고, 同條 第1項中 “ 師範大學 ” 다음에 “ 教育大學 ” 을 插入한다.

第155條의 題目을 “ (學科 · 教科) ” 로 하고,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大學 · 師範大學 · 教育大學 · 專門大學 · 各種學校를 제외한 各學校의 學科 및 教科는 大統領令으로, 教育課程은 文敎部長官이 정한다.

第163條 本文중 “ 5 萬圓 ” 을 “ 100 萬圓 ” 으로 하고, 同條第3號를 削除하며, 同條第4號中 “ 第115條第1項 ” 을 “ 第115條第1項 · 第2項 ” 으로, “ 卒業證書를 交付한者 ” 를 “ 學位를 수여한 者 ” 로 한다.

第164條 및 第165條중 “ 3 千圓 ” 을 “ 10 萬圓 ” 으로 한다.

第166條중 “ 5 百圓 ” 을 “ 5 萬圓 ” 으로 한다.

第8條第2項 · 第18條第2項 · 第22條第2項 · 第30條第2項 · 第84條第2項 · 第96條第2項 · 第114條의 2 第2項 · 第140條第2項 · 第154條第2項 및 第158條第2項中 “ 前項 ” 을 각각 “ 第1項 ” 으로 하고, 第23條第3項 및 第69條第3項中 “ 前項 ” 을 각각 “ 第2項 ” 으로 하며, 第8條第4項 및 第29條第4項中 “ 前項 ” 을 각각 “ 第3

項”으로 하고, 第 75 條 第 4 号中 “前 3 号”를 “第 1 号 내지 第 3 号”로 한다.

第 2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1 條”로, 第 94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93 條”로, 第 97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96 條”로, 第 101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100 條”로, 第 105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104 條”로, 第 119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118 條”로, 第 130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129 條”로, 第 147 條中 “前條”를 “第 146 條”로 한다.

〔別表 1〕 教師資格基準의 国民學校 正教師 (1 級) 欄에 第 3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3. 国民學校 正教師 (2 級) 資格證을 所持하고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初等教育課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 年以上의 教育經歷이 있는 者
同表의 幼稚園 正教師 (1 級) 欄에 第 3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3. 幼稚園 正教師 (2 級) 資格證을 所持하고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幼稚園 教育課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 年以上의 教育經歷이 있는 者

同表의 中等學校 正教師 (2 級) 欄중 第 8 号를 削除한다.

同表의 國民學校 正教師 (2 級) 欄의 第 3 号 내지 第 6 号를 第 4 号 내지 第 7 号로 하고, 第 3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3.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初等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

同表의 幼稚園 正教師 (2 級) 欄의 第 1 号중 “ 專門大學을 ” 을 “ 專門大學 및 이와 同等以上의 各種學校를 ” 으로 하고, 同欄의 第 2 号 및 第 3 号를 第 3 号 및 第 4 号로 하며, 第 2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2.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幼稚園 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

同表의 司書教師欄에 第 3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3. 教育大學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司書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

同表의 養護教師欄의 資格基準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大學의 看護學科 卒業者로서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

2. 專門大學의 看護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所定の 教職學点を 履修하고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
〔別表 3〕 大學教員資格基準의 備考欄 第 1 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 表中 大學은 師範大學·教育大學을, 專門大學은 放送通信大學(專門大學 卒業學~~력~~이 인정되는 課程을 말한다) 및 종전의 教育大學·初級大學· 專門學校·實業高等專門學校를 포함한다.

附 則

① (施行日) 이 法은 198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. 다만, 第 107條의 2의 規定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高等学校 入學選拔考査를 實施하고 있던 地域을 제외한 地域에 대하여는 그 施行日을 따로 文敎部令으로 定한다.

② (教育大學에 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의 教育大學은 1985年 2月末日까지 이 法에 의한 教

育大學(4年制)으로 改編되어야 하며, 그 改編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教育大學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.

③(教育大學學生에 대한 經過措置) 1985年2月末日까지 旧制教育大學(2年制)에 在學中인 學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卒業한다.

④(教育大學教員에 대한 經過措置)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教育大學(4年制)으로 改編될 당시의 旧制教育大學에 在職中인 教員은 이 法 別表3의 資格基準에 의하여 그 改編된 教育大學(4年制)의 教員으로 再任用한다.

⑤(罰則에 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.

新 · 舊 條 文 對 比 表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19 條 教育委員은 国会 議員 · 地方議會委員 · 公 務員 (大學의 教員은 除外한다), 당해 教育 委員會의 監督에 속하 는 私立學校教員과 私 立學校法人의 任員 또 는 私立學校 經營者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教育委員은 政黨 또 는 기타 政治團體에 參與하거나 加入하지 못한다.</p> <p>③ (省 略)</p> <p>第 20 條 選出委員은 당</p>	<p>第 19 條 (教育委員의 兼職 禁止)</p> <p>①..... 私 立學校를 設置 · 經營하 는 法人의</p> <p>② < 削 除 ></p> <p>③ (現行과 同一)</p> <p>第 20 條 (選出委員의 辭任)</p>

~~6700~~

現 行	改 正 (案)
<p>해 <u>위원회</u>의 同意를 얻어 辭任할 수 있다.</p>	<p>選出委員은 당해 <u>教育 위원회</u>의 同意를 얻어 辭任할 수 있다.</p>
<p>第21條 選出委員이 心 身の 障 碍로 인하여 職 務를 감당할 수 없거 나 職務上의 義務違反 기타 品位를 保持할 수 없는 非行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위원회</u>의 決議에 의하 여 당해 地方議會에 解任을 要求할 수 있 다.</p>	<p>第21條 (<u>選出委員의 解 任要求</u>) <u>教育委員會</u>의 決議에</p>
<p>第80條 (省 略)</p>	<p>第80條 (<u>教育會</u>) ① (現 行과 같음)</p>

<新 設>

第 103 條 中學校에 入學
할 수 있는 者는 國
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
는 外國에서 6年이상
의 學校教育課程을 修
了한 者로 한다.

第 107 條의 2 高等學校의
入學은 서울特別市·釜
山市·道別로 施行하는
選拔考査에 依하되 그
入學의 方法과 節次 기
타 필요한 事項은 大
統領令으로 定한다.

②第 1 項의 規定에 의
한 教育會의 組織方法
과 運營에 關한 基本
事項은 大統領令으로
定한다.

第 103 條 (入學資格).....
.....
..... 또
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
力이 있다고 認定된
者로 한다.

第 107 條의 2 (高等學校入
學方法) ①高等學校의
入學은 서울特別市·釜
山市·道別로 施行하는
選拔考査에 依하거나,
內申成績과 選拔考査를
併合한 銓衡에 依하되,



現 行	改 正 (案)
<p>다만,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<u>選拔考査를 免除할 수 있으며, 第3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제외한 實業系高等學校와 芸能・体育系高等學校 등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學校에 對하여는 選拔考査를 除外한 入学의 方法과 節次 등에 관하여 特例를 定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外國에서 9年이상의 學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</p>	<p>그 入学의 方法과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 다만,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<u>內申成績 또는 選拔考査에 의하지 아니하고 入学시킬 수 있다.</u></p> <p>1. (現行과 같음)</p>

2. 外國의 學校에서
國內의 中學校에 轉
學 또는 編入學하여
卒業한 者로서 大統
領令으로 定하는 者

3. 特殊目的을 위하여
設立된 實業系高等學
校로서 大統領令으로
定하는 學校에 入學
하는 者

2. (現行과 같음)

3. (現行과 같음)

②第1項第3號에 해당
하는 學校를 제외한
實業系高等學校와 芸能
體育系高等學校 등 文
敎部長官이 指定하는
學校에 대하여는 第1
項의 規定에 의한 內
申成績 또는 選拔考査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111條 ①大学(教育大学·<u>師範大学·專門大学</u>을 포함한다)에 <u>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</u> (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)로서 <u>대학입학예비고사(이하 “예비고사”라 한다)에 합격한 자로 한다.</u></p>	<p><u>에 의하는 外에 그 入学의 方法과 節次 등 에 관하여 特例를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第111條 (<u>大学入学資格</u>)</p> <p>①大学(<u>師範大学·教育大学·專門大学</u>을 포함한다)에 <u>入学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学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서 文敎部長官이 施行하는 大学入学学力考査(이하 “<u>学力考査</u>”라 한다)를 거친 者로 한다.</u></p>

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備考査를 免除할 수 있다.

1. 外国에서 12年 이상의 学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

2. 外国의 学校에서 国内의 高等学校에 転学 또는 編入学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

3. 高等学校를 卒業한 者로서 国家技術資格 法에 의한 技能士 2 級 이상의 国家技術 資格을 取得한 者중

다만,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学力考査를 免除할 수 있다.

1. 外国에서 12年 이상의 学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

2. 外国의 学校에서 国内의 高等学校에 転学 또는 編入学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

② 学力考査는 每年 施行하되, 그 学力考査成績은 当該年度에 限하여 效力이 있다.

③ 学力考査의 施行方法

現 行	改 正 (案)
<p><u>專門大學의 해당學科</u> <u>에 入學하고자 하는</u> <u>者.</u></p> <p><u>4. 高等學校를 卒業하</u> <u>고 産業體에 근무하</u> <u>는 者중 大學(專門</u> <u>大學을 포함한다)에</u> <u>入學하고자 하는 者</u> <u>로서 勤務成績 등 大</u> <u>統領令으로 정하는 要</u> <u>件에 해당하는 者</u></p> <p><u>③에 비고사는 매년 문</u> <u>교부장관이 시행하되</u> <u>그 합격은 응시자가</u> <u>지원한 서울특별시·부</u> <u>산시·도별로 결정한다.</u></p>	<p><u>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</u> <u>統領令으로 定한다.</u></p> <p><u>第 111 條의 2 (大學入學方法)</u></p> <p><u>大學의 入學은 第 111 條</u> <u>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</u> <u>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</u> <u>하는 選拔方法에 의한다.</u></p>

④豫備考査에 合格한
者는 당해 学年度에
한하여 大学에 入学할
수 있다.

< 削 除 >

⑤豫備考査에 合格한
者는 그가 志願하여
合格된 당해 서울特別
市·釜山市·도에 所在
한 大学에 한하여 入
学할 수 있다.

< 削 除 >

⑥豫備考査에 관하여
필요한 事項은 大統領
令으로 정한다.

< 削 除 >

第 112 條 ①大学院의 修業年限은 2年이상으로
한다.

第 112 條 (大学院의 修業
年限 및 入学資格) ①
(現行과 같음)

②大学院에 入学할 수
있는 者는 大学·師範

②大学院에 入学할 수
있는 者는 大学·師範

現 行	改 正 (案)
<p><u>大学</u>을 <u>卒業</u>한 者 또 는 이와 同等이 상의 学力이 인정된 者로 한 다.</p>	<p><u>大学·教育大学</u>을 <u>卒業</u> 한 者 또는 이와 同 등이 상의 学力이 있다 고 인정된 者로 한다.</p>
<p>第 114 條 (公開講座) <u>大</u> <u>学</u>에는 <u>生涯教育講座</u> <u>및 公開講座</u>를 들 수 있으며 <u>聽講生</u>을 받을 수 있다. 前項의 <u>聽</u> <u>講生</u>에 대하여는 3 科 <u>目</u> 이내에 한하여 受 <u>講</u>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第 114 條 (公開講座) <u>大</u> <u>学</u>에는 <u>学生이외의 者</u> <u>를 対象</u>으로 하는 <u>公</u> <u>開講座</u>를 들 수 있다.</p>
<p>第 115 條 (卒業 및 学位 등) ① <u>大学 및 師範</u> <u>大学</u>의 <u>定員内</u>의 <u>学生</u> 으로서 <u>所定</u>의 <u>課程</u>을</p>	<p>第 115 條 (学位) ① <u>大学·</u> <u>師範大学 및 教育大学</u> <u>의 定員内</u>의 <u>学生</u>으로 서 <u>所定</u>의 <u>全課程</u>을</p>

履修한 者에 대하여는
卒業證書를 수여한다.
다만, 大学 및 師範大
学에서 3年이상 履修
한 学生으로서 成績이
특히 優秀하여 所定の
課程을 大統領令이 정
하는 바에 따라 早期
履修한 者에 대하여는
第110條 및 第122條
의 規定에 의한 修業
年限에 달하기 전에 卒
業證書를 수여할 수 있
다.

② 大学 및 師範大学에
서 所定の 課程을 履
修(早期履修를 포함한
다) 하고 일정한 試

履修하고 一定한 試驗
에 合格한 者에 대하
여는 学士学位를, 大学
院에서 所定の 課程을
履修하고 一定한 試驗
에 合格한 者에 대하
여는 碩士學位를 수여
한다.

② 大学·師範大学 및 教
育大学에서 3年이상
履修한 定員内の 学生
으로서 成績이 特히 優

現 行	改 正 (案)
<p><u>驗에 합격한 者에 대</u> <u>하여는 学士学位를 大</u> <u>学院에서 所定の 課程</u> <u>을 履修하고 일정한</u> <u>試驗에 합격한 者에 대</u> <u>하여는 碩士学位를 授</u> <u>与한다.</u></p>	<p><u>秀하여 所定の 全課程</u> <u>을 大統領令이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早期履修하</u> <u>고 一定한 試驗에 합</u> <u>격한 者에 대하여는</u> <u>第110條·第120條 및</u> <u>第122條의 規定에 의</u> <u>한 修業年限에 達하기</u> <u>전에 学士学位를 수여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③第2項의 規定에 의</u> <u>하여 学位를 수여 받은</u> <u>者는 大統領令이 정하</u> <u>는 바에 의하여 文教</u> <u>部に 登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③大学校(大学院을 둔</u> <u>单科大学을 포함한다)</u> <u>에서는 博士学位를 수</u> <u>여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④大学校(大学院을 둔</u> <u>单科大学을 포함한다)</u></p>	<p><u>④第1項 내지 第3項</u> <u>의 規定에 의하여 学</u></p>

에서는 博士学位를 수여
할 수 있다.

⑤学位授与에 관하여 必
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
로 정한다.

第 120 條 教育大学の 修業
年限은 2 年으로 한다.

第 128 條의 4 (大学編入学)
專門大学을 卒業한 者는
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
따라 同系大学の 해당 学
科에 한하여 編入学할 수
있다.

第 133 條 高等技術学校에 入
学할 수 있는 者는 3

位를 수여받은 者는 大
統領令이 정하는 바에
의하여 文敎部에 登錄
하여야 한다.

⑤学位授与에
.....
.....

第 120 條 (修業年限) 教
育大学の 修業年限은
4 年으로 한다.

第 128 條의 4 (大学編入学)
專門大学을 卒業한 者
는 大学에 編入学할 수
있다.

第 133 條 (高等技術学校의
入学資格) 高等技術学

~~to be~~

現 行	改 正 (案)
<p>年制 技術學校, 中學校 를 卒業한 者 또는 이 와 同等이상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 다.</p> <p><u>第 136 條 技術學校, 高等 技術學校 또는 實業系 高等學校의 修了者 또 는 卒業者에게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技術員 資格證을 줄 수 있다.</u></p> <p><u>第 143 條 特殊學校는 盲 者, 聾啞者, 精神薄弱者,</u></p>	<p>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3 年制技術學校, <u>3 年制 高等公民學校,</u>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 는 이와 同等이상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.</p> <p><u>第 136 條 < 削 除 ></u></p> <p><u>第 143 條 (目的) 特殊學 校는 視聽覺 障礙者 등</u></p>

其他 心身에 障礙가 있
 는 者에게 国民学校, 中
 学校에 準한 教育과 그
 實生活에 必要한 知識,
 機能을 가르침을 目的으
 로 한다. 特殊学校에는
 特殊学校를 卒業한 者중
 高等学校에 準하는 教育
 을 目的으로 하는 高等
 学校 課程을 併設할 수
 있다.

第152條(省 略)

1. 中学校, 高等学校, 大
 学, 師範大学, 專門大学
 은 夜間授業 또는 季
 節授業을 할 수 있다.
- 2.~4.(省 略)

心身障礙者에게 幼稚園,
 国民学校, 中学校, 高等
 学校에 準한 教育과 그
 實生活에 必要한 知識
 및 機能을 가르침을
 目的으로 한다.

第152條(授業)(現行과
 같음)

1. 師範大学,
教育大学, 專門大学,

- 2.~4.(現行과 같음)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154 條 大学, 師範大学, 專門大学과 各種学校를 제외한 各級学校, 学生的 進級 또는 卒業은 学年制로 한다.</p> <p><u>前項</u> 이외의.....</p>	<p>第 154 條 (<u>学年制</u>) ① 大学, 師範大学, <u>教育大学</u>, 專門大学과 各種学校를 제외한 各級学校 学生的 進級 또는 卒業은 学年制로 한다.</p> <p>② <u>第 1 項</u> 이외의.....</p>
<p>第 155 條 大学, 師範大学, 各種学校를 제외한 各学校的 学科,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<u>各 教科의 教授要旨, 要目及 授業時間數</u>는 文敎部長官이 정한다.</p> <p>②~④ (省 略)</p>	<p>第 155 條 (<u>学科, 教科</u>) ① 大学, 師範大学, <u>教育大学, 專門大学</u> 各種学校를 제외한 各学校的 学科,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<u>教育課程</u>은 文敎部長官이 정한다.</p> <p>②~④ (現行과 같음)</p>
<p>第 163 條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1</p>	<p>第 163 條</p>

<p>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<u>5萬圓</u>以下の罰金에 処한다.</p> <p>1. (省 略)</p> <p>2. (省 略)</p> <p>3. 第114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</p> <p>4. <u>第115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卒業證書를 交付한 者</u></p> <p>5. (省 略)</p> <p>第164條 第9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의 督促을 받고 이를 履行하지 않는 者는 <u>3千圓</u>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.</p> <p>第165條 第97條의 規定에</p>	<p>.....</p> <p>.....100萬圓.....</p> <p>.....</p> <p>1. (同 一)</p> <p>2. (同 一)</p> <p>3. <削 除></p> <p>4. <u>第115條 第1項·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學位를 授与한 者</u></p> <p>5. (現行과 同一)</p> <p>第164條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10萬圓.....</p> <p>.....</p> <p>第165條.....</p>
--	---



<p>違反한 者는 <u>3千원</u>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.</p>	<p>..... <u>10萬원</u></p>
<p>第 166 條 第 140 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의 督促을 받고도 이를 履行하지 않는 者는 <u>5百원</u>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.</p>	<p>第 166 條..... <u>5萬원</u></p>

教 師 資 基 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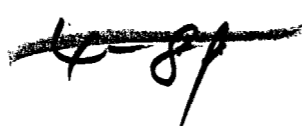
現 行					改 正 (案)				
	中等学校	國民学校	特殊学校	幼稚園		中等学校	國民学校	特殊学校	幼稚園
正 教 師 (1 級)	1 - 4 (省 略)	1 - 2 (省 略) <u><新 設></u>	1 - 2 (省 略)	1 - 2 (省 略) <u><新 設></u>	師 級)	1 - 4 (現 行 과 같 음)	1 - 2 (現 行 과 같 음) 3. 國民学校正教師 (2 級) 資 格 証 을 所 持 하 고 教 育 大 学 院 또는 文 教 部 長 官 이 指 定 하 는 大 学 院 의 教 育 科 에 서 初 等 教 育 課 程 을 專 攻 하 여 碩 士 学 位 를 받 은 者 로 서 1 年 이 상 의 教 育 經 歷 이 있 는 者	1 - 2 (現 行 과 같 음)	1 - 2 (現 行 과 같 음) 3. 幼 稚 園 正 教 師 (2 級) 資 格 証 을 所 持 하 고 教 育 大 学 院 또는 文 教 部 長 官 이 指 定 하 는 大 学 院 의 教 育 科 에 서 幼 稚 園 教 育 課 程 을 專 攻 하 여 碩 士 学 位 를 받 은 者 로 서 1 年 이 상 의 教 育 經 歷 이 있 는 者
正 教 師 (2 級)	1 - 7 (省 略)	1 - 2 (省 略) <u><新 設></u>		1. 大 学 (專 門 大 学 을 包 含 한 다) 卒 業 者 로 서 在 学 中 所 定 의 保 育 科 教 職 学 点 을	教 師 級)	1 - 2 (現 行 과 같 음)	1 - 2 (現 行 과 같 음) 3. 教 育 大 学 院 또는 文 教 部 長 官 이 指		1. 大 学 (專 門 大 学 및 이 와 同 等 以 上 의 各 種 学 校 를 包 含 한 다) 卒 業 者 로 서

공백

現 行				改 正 (案)			
中 等 学 校	國 民 学 校	特 殊 学 校	幼 稚 園	中 等 学 校	國 民 学 校	特 殊 学 校	幼 稚 園
	8. 大学卒業者로서 中等学校 正教師 (2級)의 資格 檢定에 合格한 者	3 - 6 (省 略)	履修한 者 <新 設>		定하는 大学院保 育科에서 初等教 育課程을 專攻하 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4 - 7 (現行 第3号 내 지 第6号와 같음)		在学中 所定의 保育科 教職學點 을 履修한 者 2. 教育大学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 定하는 大学院 教育科에서 幼稚 園 教育課程을 專 攻하고 碩士學位 를 받은 者 3 - 4 (現行 第2号 및 第3号와 같음)
	9. (省 略)		2 - 3 (省 略)		9. (現行과 같음)		
準 教 師	1 - 2 (省 略)	1 - 3 (省 略)	1 - 2 (省 略)	教 師	1 - 2 (現行과 같음)	1 - 3 (現行과 같음)	1 - 2 (現行과 같음)

공백

現 行					改 正 (案)				
	中等学校	國民学校	特殊学校	幼稚園		中等学校	國民学校	特殊学校	幼稚園
教導教師	1 - 4 (省略)	1 - 2 (省略)			教師	1 - 4 (現行과 같음)		1 - 2 (現行과 같음)	
司書教師	1 - 2 (省略) <新設>				教師	1 - 2 (現行과 같음) 3. 教育大学院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学院 教育科에서 司書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			
養護教師	1. 大学の 看護学科를 卒業한 者 2. 看護系学校 (高等学校 이하 課程을 제외한다) 卒業者로서 在学中 所定の 教職學點을 履修한 者 3. 看護員免許證所持者로서 看護教師의 資格檢定에 合格한 者				教師	1. 大学の 看護学科 卒業者로서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 2. 專門大学の 看護科 卒業者로서 在学中 所定の 教職學點을 履修하고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 3. <削除>			
備考: 1 - 4 (省略)					1 - 4 (現行과 같음)				



공백